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 (2024. 6. 17.)

2024년도 제1회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하나

목 차

I	제안개요	1
II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2
	① 총괄 현황	2
	② 세입예산(재원)	2
	③ 세출예산	3
III	재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4
	① 총괄 현황	4
	② 일반회계 현황	5
IV	종합 검토 의견	7

검 토 보 고 서

I 제안 개요

안 건 명

- 2024년도 제1회 재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4일(금), 마포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24년 5월 28일(화)

위원회 회부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II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1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895,768,447	847,789,455	47,978,992	5.66%
일 반 회 계	856,139,885	805,931,877	50,208,008	6.23%
특 별 회 계	39,628,562	41,857,578	△2,229,016	△5.33%
의 료 급 여 기 금	657,976	580,000	77,976	13.44%
마포농수산물시장	7,417,005	6,323,221	1,093,784	17.30%
주 차 장	24,865,427	28,595,749	△3,730,322	△13.05%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5,809,811	5,579,977	229,834	4.12%
건 축 안 전	878,343	778,631	99,712	12.81%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9억 7,899만 2천 원(5.66%)이 증가한 8,957억 6,844만 7천 원임.
 - ▶ 일반회계: 8,561억 3,988만 5천 원(502억 800만 8천 원 증가)
 - ▶ 특별회계: 396억 2,856만 2천 원(22억 2,901만 6천 원 증가)

2 세입예산(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합 계	47,978,992	2,734,489	21,767,201	23,477,302
일 반 회 계	50,208,008	2,734,489	24,273,069	23,200,450
특 별 회 계	△2,229,016		△2,505,868	276,852
의 료 급 여	77,976		19,560	58,416
마포농수산물	1,093,784		1,093,784	
주 차 장	△3,730,322		△3,820,689	90,367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229,834		165,817	64,017
건 축 안 전	99,712		35,660	64,052

3 | 세출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합 계	자체사업		보조사업		반환금	예탁금
50,208,008	계	15,527,129	계	8,080,847	15,524,505	11,075,527
	증	16,267,249	증	8,586,530		
	감	△740,120	감	△505,683		

○ 일반회계 세출내역

- ▶ 자체사업 : 155억 2,712만 9천 원
- ▶ 보조사업 : 80억 8,084만 7천 원
- ▶ 반 환 금 : 155억 2,450만 5천 원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 155억 2,450만 5천 원
- ▶ 예 탁 금 : 110억 7,552만 7천 원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업편성 (증·감액)	반환금	예비비	예탁금
계	△2,229,016	3,713,527	243,041	△7,258,967	1,073,383
의 료 급 여	77,976		77,976		
마 포 농 수 산 물	1,093,784			20,401	1,073,383
주 차 장	△3,730,322	3,670,000	100,806	△7,501,128	
발 전 소 주 변 업 지 역 지 원 사 업	229,834	43,527	941	185,366	
건 축 안 전	99,712		63,318	36,394	

○ 특별회계 세출내역

- ▶ 세출편성 : 36억 7,000만 원
- ▶ 반 환 금 : 2억 4,304만 1천 원
- ▶ 예 비 비 : △72억 5,896만 7천 원
- ▶ 예 탁 금 : 10억 7,338만 3천 원

Ⅲ 재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1 총괄 현황

1.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463,300,564	415,827,045	47,473,519	11.42%
일 반 회 계	461,944,034	414,470,515	47,473,519	11.45%
특 별 회 계	1,356,530	1,356,530	0	0.00%
주 차 장 (징 수 과)	1,356,530	1,356,530	0	0.00%

○ 재정관리국 소관 세입은

- ▶ 기정예산액 대비 11.42%인 474억 7,351만 9천 원 증가한 4,633억 56만 4천 원이며, 마포구 전체 세입 예산액 (8,957억 6,844만 7천 원)의 51.7%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8,121,834	16,880,104	11,241,730	66.60%
일 반 회 계	27,591,715	16,349,985	11,241,730	68.76%
특 별 회 계	530,119	530,119	0	0.00%
주 차 장 (징 수 과)	530,119	530,119	0	0.00%

○ 재정관리국 소관 세출은

- ▶ 기정예산액 대비 66.60%인 112억 4,173만 원 증가한 281억 2,183만 4천 원이며, 마포구 전체 세출 예산액 (8,957억 6,844만 7천 원)의 3.14%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현황

1.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461,944,034	414,470,515	47,473,519	11.45%
재 무 과	120,722,329	73,248,810	47,473,519	64.81%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134,934,424	87,460,905	47,473,519	54.28%
보 전 수 입 등	112,685,694	65,212,175	47,473,519	72.80%
잉 여 금	89,485,244	65,212,175	24,273,069	37.22%
순 세 계 잉 여 금	89,485,244	65,212,175	24,273,069	37.22%
전 년 도 이 월 금	23,200,450		23,200,450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329,130		13,329,130	순증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9,871,320		9,871,320	순증

-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45%인 474억 7,351만 9천 원이 증가한 4,619억 4,403만 4천 원임.
- ▶ 재무과 세입은 추경예산 재원 중 하나인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2억 7,306만 9천 원이 증가한 894억 8,5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3억 2,913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8억 7,132만 원을 반영하였음.

2. 세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7,591,715	16,349,985	11,241,730	68.76%
예 산 정 책 과	22,801,366	11,575,839	11,225,527	96.97%
미 래 핵 심 사 업 발 굴	150,000		150,000	순증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탁 금	11,075,527		11,075,527	순증
재 산 세 과	562,784	546,581	16,203	2.96%
국 고 보 조 금 반 환 금	16,203		16,203	순증

○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275억 9,17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63억 4,998만 5천 원 대비 68.76%에 해당하는 112억 4,173만 원이 증가하였음.

- ▶ 예산정책과 2024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자치구 수요처 필수부담금 1억 원 이상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함.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최대 시비 3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선정결과는 7월 중 안내될 예정임. 지원분야는 스마트로봇존 공공수요형으로 자치구·공공기관 소관 시설에서 제공되는 로봇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함임.

IV 종합 검토의견

① 2024년도 제1회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 일반회계 세입은 4,619억 4,40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144억 7,051만 5천 원 대비 11.45%에 해당하는 474억 7,351만 9천 원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은 275억 9,17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63억 4,998만 5천 원 대비 68.76%에 해당하는 112억 4,173만 원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 없음.

② 검토의견

- 금번 재정관리국 수입의 대부분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서 그 중 순세계 잉여금 894억 8,524만 4천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임. 그 밖에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잔액 및 시·도보조금 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은 신규사업 1건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함.
 - ▶ 예산정책과는 2024년도 ‘서울형 R&D 지원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자치구·공공기관 소관 시설에서 제공되는 로봇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고자 함. 최근 고령인구 확대와 돌봄노동력 부족에 신기술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현장검증을 통해 돌봄로봇의 실용화·양산화를 타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영)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따라 일반회계 여유자금 110억 7,552만 7천 원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였음.
-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¹⁾하도록 하고 있음. **‘통합 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예비비 성격의 자금임.

현재 마포구는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요건을 미충족하여 적립액은 없음.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 적립이 미흡하므로, 적립요건을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적립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음. 이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²⁾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음.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세 세입여건의 불안정성과 경제의 불확실성 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임. 이 기금을 활용하여 회계 간의 재정적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연도 간 세입 불균형을 완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및 용도

구분	재원	용도
통합 계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예수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재정 안정화 계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황 <p>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p>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